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9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6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김선교 · 김종양
이상휘 · 송석준 · 신성범
김정재 · 김용태 · 박성훈
유용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”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,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.

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,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, 어려운 한자어, 외래어·외국어,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7조, 제12조 등).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전단 중 “경유하여”를 “거쳐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2”를 “둘”로, “경유하여야”를 “거쳐야”로 한다.

제7조의5제1항 전단 중 “공작물”을 “인공구조물”로 한다.

제8조의6제2항 중 “매수협의를 착수하여야”를 “매수협의를 시작하여야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개발사업의 착수)”를 “(개발사업의 시작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착수기한”을 “시작 기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사업 착수기한의”를 “사업시작 기한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”를 “사업시작 기한까지 그 사업을 시작하지”로, “사업 착수기한의”를 “사업시작 기한의”로 한다.

제33조제1호 중 “공작물”을 “인공구조물”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) ① (생 략)	제7조(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(이하 “개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가 관할 시·도지사를 <u>경유하여</u>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·도지사를 각각 <u>경유하여야</u>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거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둘</u> ----- ----- ----- <u>거쳐야</u> -----.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5(행위의 제한)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, 건축물의 건축, <u>공작물</u> 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	제7조의5(행위의 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<u>인공구조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6(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) ① (생략)

②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협의를 착수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2조(개발사업의 착수) 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.

제3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

제8조의6(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매수협의를 시작하여야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개발사업의 시작) ① ----

시작 기한-----

-----.

② -----사업시작 기한까지 그 사업을 시작하지-----
-----사업시작 기한의-----

-----.

제33조(벌칙) -----

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, 건축물의 건축, <u>공작물</u>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2. (생략)	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인공구조물</u>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
---	---